국가대표 스텝(지도자, 트레이너, 전담팀) 복무 지침

제정 2024. 10.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럭비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트레이너, 전담팀 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근무장소) 대한럭비협회 국가대표 스텝의 근무장소는 근로 목적에 따라 대한럭비협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주근무지는 강화훈련 장소, 대회개최지, 대한럭비협회 사업 수행 장소, 사무처 소재지로 한다.

1. 국가대표 훈련소집 및 대회참가: 훈련장소 및 대회개최지
2. 국가대표 미소집시: 대한럭비협회 사무처 및 대한럭비협회가 지정한 근무지

제3조 (주요업무)

1 . 근로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가대표경기력향상

① 국가대표 강화훈련 계획수립 및 지도와 관리, 인권과 보호의무

③ 연간, 월간, 주간 등 정례적인 훈련계획서 작성 및 보고・제출과 일일훈련일지작성 및 보고·제출

④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지도

⑤ 국가대표가 출선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 및 판정 등 이의 발생 시 제기

⑥ 각 종 국제 대회 참가 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과보고

⑦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교체 건의

⑧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보완요구, 훈련 성과를 원 소속팀 지도자와의 상시 공유

⑨국가대표지도자 보수교육 이수(훈련스킬, 훈련의과학, 심리분석, 선수인권 · 인성 교육 등)

⑩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한 경쟁국가 및 선수분석

나.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
① 연령별 유· 청소년 유망주 발굴, 육성 계획 안 마련, 보고
② 국내·외 연령별 유·청소년 경기력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다. 기타 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훈련 운영 등 요구에 대한 협조
라. 기타 협회 요구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사항 등
2.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관련 법령, 대한체육회 및 협회의 규정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조건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각 회원종목단체별 국가대표 강화 훈련 대상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제시 하여야 한다.
4. 직무 별 업무분장은 붙임1에 따른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수립하는 훈련계획에 따라 근로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 미실시 기간 중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근무계획) ① 근로자는 훈련계획과 별도로 강화훈련이 없는 기간 근무계획을 전달 25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휴일 및 휴가) ①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가. 주휴일: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며, 구체적으로는 훈련계획에 따른다.
나.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일요일 제외)
라. 기타 정부가 정한 휴일
② 국가대표 스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훈련을 미실시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출장) ① 국가대표 스텝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대한럭비협회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한럭비협회 사무처의 출장명령에 따라 출장 시 사무처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겸직) ① 근로자는 협회의 허가없이 다른 사업 및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겸직 시 계약상 업무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겸직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협회는 겸직의 내용이 근로자의 겸직 신청 시 신청요건과 상이한 경우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2024.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2024. 10. 4. 부터 시행한다.

붙임1.

직무/직급	업무분장	비고
국가대표 지도자1 /헤드코치	● 국가대표 훈련, 대회참가, 경기력향상 업무 총괄 ● 각 급 국가대표 선수 지도 및 전술·전략 개발 ● 각종 회의참석 및 보고(대표자) ●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외국인 지도자 관리 ●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견전달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교체 건의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보완요구, 훈련 성과를 원 소속팀 지도자와의 상시 공유 ● 각종 보고서 작성 및 훈련 · 대회참가 계획 (정) ●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지도(정) ●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한 경쟁국가 및 선수분석 ● 각 종 국제 대회 참가 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과보고 ●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	
국가대표 지도자2 /코치	● 각 급 국가대표 선수 지도 및 전술·전략 개발 ● 각종 보고서 작성 및 훈련 · 대회참가 계획 ●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지도 ●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한 경쟁국가 및 선수분석 ● 각 종 국제 대회 참가 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과보고 ●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 ● 비디오 분석 등 각종 경기력 분석 프로그램 운용	
트레이너1/ S&C코치	● 각 급 국가대표 부상 및 체력관리 ● 비 훈련기간 중 국가대표 풀 체력관리 ● 피트니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정) ● 재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부) ● 국가대표 훈련용품(GPS 등) 관리(정) ● 국가대표 의료물품 관리(부) ● 경기력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정보 제작 ● 선발전 등 피트니스 테스트 ● 유관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 관리 ● 도핑방지 교육 및 관리(보조제 등)	
트레이너2/ 의무트레이너	● 각 급 국가대표 부상 및 체력관리 ● 비 훈련기간 중 국가대표 부상관리 ● 피트니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부) ● 재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정) ● 국가대표 의료물품(의약품, 테이핑 등) 관리(정) ● 경기력향상을 위한 부상예방 및 관리 정보 제작 ● 차출불가 선수 판단을 위한 의료기관 협조(진단서) ● 유관기관 (의무위원회, 병원) 관리 ● 도핑방지 교육 및 관리(보조제 등)	
전담팀/ 통역 및 메니저	● 국가대표 메니저 업무 총괄 ● 훈련 및 해외파견 준비 업무 총괄 ● 아시아연맹, 월드럭비, 대회 개최국 협회 소통 ●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지 관리 관련업무 ● 외국인 지도자 통역 및 선수단 통역	